

● 제283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018. 9. 6.**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67

### I. 조례안 개요

#### 1. 제출자 및 제안경과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 : 2018. 8. 16.

다. 회부일 : 2018. 8. 21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는 폭력피해여성 등에 대한 의료, 수사, 상담 등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 의료행위, 수사조사, 치유상담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권한과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바, 전문성과 노하우,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위탁사무명 :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운영
-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시 직영시 근무연한 등 동일조건의 인력을 운영할 경우 인건비 부분의 상당한 증가로 예산 낭비가 초래될 수 있음.
    - 폭력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의료행위, 수사조사, 치유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적 권한과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바,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기가 곤란.
- (3) 위탁사무 내용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의료행위, 수사조사, 치유상담 등을 통합지원함으로써
  -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를 방지
- (4)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 규모 : 건물  $99.55\text{m}^2$
  - 지원시설 : 사무공간( $39.89\text{m}^2$ ), 상담실( $7.61\text{m}^2$ ), 모니터실 ( $6.51\text{m}^2$ ), 진술녹화실( $9.47\text{m}^2$ ), 진료실( $13.02\text{m}^2$ ), 피해자안정실( $6.50\text{m}^2$ ), 대기실( $4.32\text{m}^2$ ), 탕비실( $7.82\text{m}^2$ ), 화장실( $4.41\text{m}^2$ )

(5) 민간위탁 기간 : 3년(2018.1.1. ~ 2020.12.31.)

(6) 수탁기간 선정방법 : 재계약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34,486천 원(2018년)

※ 여성가족부 국비50% 시비50% 매칭사업

○ 산출근거

- 인건비 306,107천 원, 관리운영비 15,379천 원, 사업운영비 4,600 천 원, 부대비용사업비 6,000천 원, 시설비 2,400천 원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8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④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19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 1 동의안 제출 경위 및 민간위탁 추진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sup>1)</sup>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함)<sup>2)</sup>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시의회는 그 동안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효과성 증대를 위해 시의회 동의절차 및 회계감사 의무화를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권을 강화해왔으며,
  - 특히 현행 개정 「민간위탁조례」(2017.7.21.시행)에서는 시의회의 민간 위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부칙 제2조<sup>3)</sup>을 통해

- 
-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준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제2조(의회동의 절차의 특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제4조의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한 차례도 의회의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 또는 재위탁시”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음.

-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과 관련하여 서울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제1차 회의(2017.6.16.)에서 여성가족정책실장의 보고가 있었으나, 개정된 「민간위탁조례」 부칙 제2조의 특례규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2017. 7. 21일 이후에 재계약이 개시되고<sup>4)</sup> 2008년 최초 위탁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동 민간위탁 재계약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음.
  - 이에 사후적으로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민간위탁의 위법성 해소를 통한 하자치유를 위해 본 동의안이 제출된 것임.
- 시장이 위탁하려는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운영 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의료행위, 수사조사, 치유상담 등을 통합 지원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는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사업이 지방이양 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2008.11.5일 보라매병원에 민간위탁으로 “서울 보라매병원 원스톱지원센터”가 최초 설치된 이후,

※ 2014년 전국 센터명칭 일원화를 통해 기관명이 현재의 해바라기센터로 변경되었음.

---

4) ○ 위탁기간 : 2018.1.1.~2020.12.31. 3년간

- 2010. 4. 5일에 제정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sup>5)</sup> 및 동법 시행령 제6조<sup>6)</sup>에 따라 운영 중이며, 자세한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음.

###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 경위〉

- '08.11.5. 「보라매원스톱지원센터」를 수의계약으로 서울보라매병원에 설치하고 민간위탁  
    : (수탁자) 보라매병원 (기간) 2008.11.05.~2009.12.31. 1년2개월
- 2회차('10.1.1), 3회차('11.1.1), 4회차('14.1.1) 재계약  
    : (수탁자) 서울보라매병원,
- '10.4.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센터 설치 근거마련(「성폭력방지법」 제18조)
- '14년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로 개칭(여성부)
- '17년 5월 5회차 민간위탁추진계획 수립, 시의회 보고('17.6.16.)  
    ※ 적격심사위원회 개최, 70점이상 평가로 '적정'
- 5회차 민간위탁 재계약('18.1.1)  
    : (수탁자) 서울보라매병원, (기간) 2018.1.1.~2020.12.31., 3년
- '18년 8월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5)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6)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 2

##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검토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sup>7)</sup>인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의 운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볼 수 있으며,
- 「민간위탁조례」 제4조<sup>8)</sup>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분야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7)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2018년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 p.8.

8)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삭제

##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사업 내용>

사 업	내 용
상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접수 및 면담조사</li> <li>•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을 통한 심리안정 조치</li> <li>• 유관기관과의 연계</li> </ul>
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치료</li> <li>• 외과 및 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료</li> <li>• 피해자 진료 및 진단서 발급지원</li> <li>• 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 조치</li> </ul>
수사·법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 및 소송절차에 대한 정보제공</li> <li>• 증거물 채취</li> <li>• 피해자 진술서 작성</li> <li>• 진술녹화 실시 등 법적 증거 확보</li> <li>•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을 통한 소송지원</li> </ul>

- 또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sup>9)</sup>에서 수탁기관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종합병원, 지방의료원 등으로 정하고 있는 한편,
- 집행부는 폭력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의료행위, 수사조사, 치유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등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자격이 있는 자, 「의료법」에 의료인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

9)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4.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하고, 경찰청의 파견경찰관에 대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하여 공개 모집이 불가하며, 업무수행에 있어 법적 권한과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특성 상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 3 종합 검토 의견

- 동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민간위탁은 법적 요건 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등 그 사무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민간위탁조례」개정(2017.7.21.시행)에 따른 의회동의 절차를 적기에 수행하지 않은 결과, 현재의 민간위탁 협약에 위법성이 존재하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의회 동의절차를 추진하여 조례의 법적 구속력과 절차적 정의를 치유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집행부는 향후 유사한 실기(失期)를 범하지 않도록 규정 준수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